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자료집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 내지 5항, 7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약어표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처벌법



#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 12년
3	배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아동·청소년 알선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5	구입 등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1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아자</li> <li>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자수</li> <li>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li> <li>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 유형)</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불원</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신뢰관계 이용</li>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2.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2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3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소지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4유형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li> <li>•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 유형)</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	반포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3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li> <li>•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 유형)</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9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2	강요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li> <li>• 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5. 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유형의 정의]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가. 제1유형(제작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

#### 나. 제2유형(영리 등 목적 판매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 다. 제3유형(배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라. 제4유형(아동·청소년 알선)**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

**마. 제5유형(구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2.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제1유형(촬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나. 제2유형(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다.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라. 제4유형(소지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제1, 2, 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가. 제1유형(편집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나. 제2유형(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합성 또는 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다.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가. 제1유형(협박)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나. 제2유형(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

## 5. 통신매체이용음란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양형인자의 정의]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sup>1)</sup>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

1)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 ① 제작, 수입, 수출하거나, ②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학생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③ 판매·대여·배포·제공 목적으로 소지·운반·광

고·소개하거나, ④ 공연히 전시, 상영하거나, ⑤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 또는 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대상인 아동·청소년인 장애인을 또는 위 아동·청소년인 장애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카.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제(師弟)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

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2. 카메라등이용촬영

### 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촬영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촬영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③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 편집, 합성, 가공한 것임을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편집, 합성, 가공하여

- 나,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학생, 직장 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4. 통신매체이용음란**

#####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음란성)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 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 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사유로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II. 집행유예 기준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중사자의 범행</li>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li> <li>○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li> <li>○ 약물중독, 알콜중독</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자수</li> <li>○ 진지한 반성</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처벌불원</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2.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또는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처벌불원</li> <li>○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li> <li>○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li> <li>○ 약물중독, 알콜중독</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자수</li> <li>○ 진지한 반성</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처벌불원</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li> <li>○ 약물중독, 알콜중독</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자수</li> <li>○ 진지한 반성</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4.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부정적	긍정적
<p>주요 참작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처벌불원</li> </ul>
<p>일반 참작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li> <li>○ 약물중독, 알콜중독</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자수</li> <li>○ 진지한 반성</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자료집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양형위원회

## I. 개관

### 1. 특징

-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움
  -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 보호법익

- ▣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 아동·청소년 보호에 더하여 건전한 성 풍속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함: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립하는 범죄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음(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피해자가 존재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 원하지 않는 촬영, 편집, 촬영물 유포,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행위, 음란행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소극적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

##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 가.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1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	무기징역, 5년↑ 징역
	②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 / 소지, 운반, 광고, 소개 / 공연히 전시, 상영	5년↑ 징역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 / 광고, 소개 / 공연히 전시, 상영	3년↑ 징역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정황 알면서 알선	3년↑ 징역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 소지, 시청	1년↑ 징역
⑦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 수입, 수출	제1항의 1/2 가중

## 나. 성폭력처벌법

### 1)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4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7년↓ 징역, 5천만 원↓벌금
	㉠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	7년↓ 징역, 5천만 원↓벌금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③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제2항 범죄	3년↑ 징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⑤	상습으로 제1항 내지 제3항	각 형의 1/2 가중

##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p>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u>편집·합성 또는 가공</u>(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u>반포등을 한 자</u>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u>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u>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u>영리를 목적으로</u>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④ <u>상습으로</u>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4조의2	① 반포등 목적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5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① 제1항에 따른 편집물 등을 반포등 ② 제1항의 편집등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5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③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제2항 범죄	7년↓ 징역
④	상습으로 제1항 내지 제3항	각 형의 1/2 가중

###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u>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u> 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u>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u>상습으로</u>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4조의3	①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사람을 협박	1년↑ 징역
	②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강요	3년↑ 징역
	③ 상습으로 제1항, 제2항	각 형의 1/2 가중

### 4)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3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말 등을 도달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 2. 양형기준 설정범위

###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 미수 제외 각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 2, 3, 4, 5, 7항) ⇨ 포함

-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 유통되는 전형적인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으로서 디지털 성범죄에서 법정형이나 평균 형량이 높음
- 웹하드 등을 통한 음란물·성착취물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사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 있음

▣ 미수(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 ⇨ 제외

- 살인범죄 외에 아직까지 미수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 사례가 없고, 다양한 미수 범죄의 행위 태양 또는 범의 침해 정도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

###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 포함

- 지난 10년간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11.3배(585건 → 6,615건) 증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08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0.2%로 증가<sup>1)</sup>
- 최근 강남 유명 클럽 성관계 몰래카메라 사건, 유명 앵커의 지하철 몰래카메라 사건 등으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높아짐

### 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 포함

1)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15.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범죄통계 원표를 토대로 분석

- 종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법정형이 유사하므로 그에 준하여 형량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행위 태양이 유사하여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음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의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임. 비록 신설되어 양형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라 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설정하여 이 범죄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할 법관에게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안내 또는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함

#### 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 포함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이미 협박·강요 범죄로 처벌되고 있었음. 따라서 양형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권고 형량 범위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에 큰 어려움이 없음
- 처벌 규정이 성폭력처벌법에 존재하고, 범행의 수단으로 불법 신체 촬영물 등이 사용되었다는 데 주목하여 일반적인 협박·강요 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만큼, 기존의 폭력 범죄나 권리행사 방해 범죄의 양형기준에 추후 추가하는 방식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함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 포함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일종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

- 범죄 발생량도 상당함(양형자료조사 대상 1,891건 중 196건)

### Ⅲ. 범죄유형 분류

#### 1. 일반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

#### 2. 독립 범죄군 여부

##### ▣ 일반 성범죄와 독립된 범죄군으로 설정함

- 디지털 성범죄는 유형력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 등을 주로 이용하는 범행 수법 및 광범위한 피해 확산 양상 측면에서 기존의 성범죄와는 전혀 다른 형태·성격의 범죄임
-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 포섭할 경우, ① 일반적 기준, ②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③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체계 정합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급격히 증가하는 범죄발생 건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한다는 의미를 더욱 강조함

#### 3. 대유형 분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5개 대유형으로 분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성요건과 양형인자 등에서 차이가 있음.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여 별개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별개의 양형인자표를 사용하여 각각의 범행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

#### 4. 소유형 분류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각 항을 별개 유형으로 분류(상습범 제외)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각 항은 각각 행위태양과 법정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 조항별로 유형을 분류함
- 다만, 각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제14조의2 제4항, 제14조의3 제3항)은 그 형량 가중 방식(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을 반영하여, 별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하한을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둠

나. 통신매체이용음란

▣ 하나의 구성요건이므로 별도 소유형을 구분하지 않음

## 5. 최종 유형분류

· 대유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3	배포 등			
4	아동·청소년 알선			
5	구입 등			

· 대유형 2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2	반포 등			
3	영리 목적 반포 등			
4	소지 등			

· 대유형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 등			
2	반포 등			
3	영리 목적 반포 등			

· 대유형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2	강요			



· 대유형 5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 IV. 형량 범위 검토

### 1. 권고 형량 범위 설정 기준

#### ▣ 일반적 고려사항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에 관해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특수한 사항

-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 소유형 2(영리 등 목적 판매 등), 소유형 3(배포 등), 소유형 5(구입 등)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었음: 상향된 법정형을 적용한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참고할 양형 실무가 없는 상황임.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특히, 유사한 성격의 성범죄 또는 성매매범죄)에서 정한 형량 범위를 참고함
- 상습 제작 범죄에 대해서 형의 1/2을 가중하는 조항 신설됨

#### ▣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특수한 사항

- 과거 구약식이나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많았으나, 최근 징역형 선고비율과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임
- 특히 유포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법률 개정 현황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법정형은 2020. 5. 19. 아래와 같이 변경됨

항	구분	기존	현재
1	촬영	5년↓ 징역, 3천만 원↓벌금	7년↓ 징역, 5천만 원↓벌금
2	반포 등	5년↓ 징역, 3천만 원↓벌금	7년↓ 징역, 5천만 원↓벌금
3	영리 목적 반포 등	7년↓ 징역	3년↑ 징역
4	소지 등	-	3년↓ 징역, 3천만 원↓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은 2020. 5. 19. 징역형은 2년 이하로 동일하고 벌금형만 5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됨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특수한 사항

- 2020. 3. 또는 2020. 5. 신설된 범죄로,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참고할 양형 실무가 없는 상황
-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특히, 유사한 성격의 성범죄 또는 성매매범죄, 협박·강요 범죄)에서 정한 형량 범위를 참고함

##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형량 범위 검토

### 가. 소유형 1(제작 등)

## 1) 법정형 동일 성범죄군 형량 범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 4, 5항(무기 / 5년↑)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청소년 강간·준강간 청소년 위계·위력 간음	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

## 2) 선고 형량

▣ 양형자료 조사결과 (2014. 1. 1.~2018. 12. 31. 선고 단일범)

전체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인원	3	12	15
	%	20.0	80.0	100.0

실형		형량(월)				전체
		5	6	30	36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인원	-	-	3		3
	%	-	-	100.0		100.0

집행유예		형량(월)								전체
		1	4	6	8	10	12	30	36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인원	-	-	-	-	-	-	10	2	12
	%	-	-	-	-	-	-	83.3	16.7	100.0

▣ 분석

- 평균형량 = 30.4월
- 법정형 하한 징역 5년 → 작량감경한 징역 2년6월(30월)에 집중
- 처벌불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상당 부분 고려함.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상 범죄의 양형분

포만으로는 기본 영역이나 가중 영역의 형량 범위까지 가늠하기는 어려움

### 3) 법관 대상 설문조사

감경 영역	인원	%	기본 영역	인원	%	가중 영역	인원	%
2년6월	385	57.9	2년6월	99	14.8	4년 이하	94	14.1
3년	144	21.7	3년	211	31.6	5년	252	37.9
3년6월	55	8.3	3년6월	86	12.9	6년	75	11.3
4년	34	5.1	4년	59	8.8	7년	132	19.8
4년6월	6	0.9	4년6월	5	0.7	8년	60	9.0
5년	26	3.9	5년	158	23.7	9년	20	3.0
5년6월	2	0.3	6년	17	2.5	10년 이상	32	4.8
6년 이상	13	2.0	7년	19	2.8	전체	665	100
전체	665	100	8년	3	0.4			
			9년 이상	11	1.6			
			전체	668	100			

### 4)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1유형)

#### ■ 감경 영역

- 제작 등 범죄의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감경인자를 갖춘 감경 영역의 경우 하한이 법정형 하한(징역 2년 6월)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 감경 영역의 상한은 기본 영역 또는 가중 영역과의 관계,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군 양형기준에서 설정된 감경 영역 상한과의 균형, 규범적 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 6년으로 함이 적절

#### ■ 기본 영역

-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도 기본 영역 하한이 5년인 경우가 존재함. 특히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의 기본 영역 하한이 5년인데, 청소년 강간·유사강간과 비교하여 성착취물제작의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 가중 영역

- 감경 영역의 상한(징역 6년)과 가중 영역의 하한이 일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역 7년이 바람직함. 엄정한 양형을 권고한다는 의미에서 기존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가중 영역의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함께 높일 필요가 있음
-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인 점,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특별조정을 하면 가중 영역 상한의 1/2이 가중되는 점, 경합범일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이 가중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가중 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정함

#### ■ 상습범

- 법률 개정으로 추가된 상습 제작 등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방식으로 가중된 형량 범위를 권고함이 타당

-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한 법률 규정의 취지를 반영
- ‘상습’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영역 이동 방식을 취할 경우 서술식 기준과 비교하여 가중의 효과가 떨어져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음

## 나. 소유형 2(영리 등 목적 판매 등)

### 1) 법정형 동일 성범죄, 성매매범죄 형량 범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 5항(5년↑)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유사강간 / 위계·위력유사성교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4호(5년↑)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 2) 선고 형량과 법관 대상 설문조사

-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10년 이하 징역 → 5년 이상 징역), 기존 선고 형량에 대한 운영지원단의 양형자료 조사결과나 기존 법정형을 전제로 하여 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의미가 없게 됨

## 3)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 12년

###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소유형 1(제작 등)과 비교하여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법률 개정 전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소유형1(제작 등)보다 죄책의 정도가 다소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소유형 1(제작 등)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승되었고, 아직 변경된 법정형에 따른 양형실무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양형기준 설정 단계에서는 규범적 조정에 신중을 기하고, 양형실무의 추이를 분석하여 추후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정형이 동일한 종전 성범죄/성매매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구성요건적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상한을 다소 높이는 범위에서 규범적 조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정형이 동일한 성범죄/성매매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더 높기  
설정하여,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함

**다. 소유형 3(배포 등), 소유형 4(아동·청소년 알선)**

**1) 법정형 동일 또는 유사 성범죄 형량 범위**

▣ 형법 제297조(3년↑)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 4항(3년↑ / 3-5천만 원)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2) 선고 형량과 법관 대상 설문조사**

-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7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징역), 기존  
선고 형량에 대한 운영지원단의 양형자료 조사결과나 기존 법정  
형을 전제로 하여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의미  
가 없게 됨

**3)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배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아동·청소년 알선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고, 아직 변경된 법정형에 따른 양형실무가 형성되지 않음. 따라서 법정형이 동일한 종전 성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구성요건적 행위가 다양하고,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한을 다소 높이는 범위에서 규범적 조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정형이 동일한 성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더 높이 설정하여,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함

라. 소유형 5(구입 등)

1) 법정형 유사 성범죄 형량 범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1년↑ / 1-3천만 원)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위계·위력 추행	9월-1년6월	1년3월-2년6월	2년-3년

※ 서술식 기준에 따라 소유형2 의제간음/강제추행의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 것임

2) 선고 형량과 법관 대상 설문조사

-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1년 이하 징역 → 1년 이상 징역), 기존 선고 형량에 대한 운영지원단의 양형자료 조사결과나 기존 법정형을 전제로 하여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의미가 없게 됨

### 3)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5	구입 등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법률 개정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에 구입, 시청이 추가되었고, 구입 경로·성착취물의 불법성 정도 등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량 범위를 다소 넓게 정하여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하되, 죄책의 정도를 감안하여 다소 하향하는 방향으로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함이 타당

### 3.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형량 범위 검토

#### 가. 소유형 1(제작 등)

##### 1) 법정형 동일 성매매범죄군 형량 범위

####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7년↓, 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10월	8월-1년6월	1년-3년

####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7년↓, 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

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10월	8월-1년6월	1년-3년

2) 선고 형량

▣ 양형자료 조사결과 (2014. 1. 1.~2018. 12. 31. 선고 단일범)

전체	실형	집행유예	합계
인원	242	1,316	1,558
%	15.5	84.5	100

실형	형량(개월)																			합계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2	24	30	36	42		54
인원	1	2	29	8	77	1	48	1	31	25	2	1	1	5	1	4	2	1	1	1	242
%	0.4	0.8	12.0	3.3	31.8	0.4	19.8	0.4	12.8	10.3	0.8	0.4	0.4	2.1	0.4	1.7	0.8	0.4	0.4	0.4	100

집행유예	형량(개월)										합계
	2	4	5	6	8	9	10	12	14	18	
인원	2	258	11	603	217	1	125	92	1	6	1,316
%	0.2	19.6	0.8	45.8	16.5	0.1	9.5	7.0	0.1	0.5	100

▣ 분석

- 평균형량 = 7.08개월(실형 8.66개월, 집행유예 6.79개월)
- 실형 = 6개월 31.8% > 8개월 19.8% > 10개월 12.8%
- 집행유예 = 6개월 45.8% > 4개월 19.6% > 8개월 16.5%

※ 다만,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5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양형자료 조사결과는 제한된 범위에서 참고 가능

### 3)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2019. 10. 25. 제9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당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었던 ‘반포 등 범죄’와 7년 이하 징역이었던 ‘영리 목적 반포 등 범죄’를 하나의 유형(소유형2)으로 묶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함
-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소유형 1(촬영)의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종전 소유형2와 유사하게 되었으므로, 양형위원회가 종전에 심의한 소유형 2(반포 등)의 권고 형량 범위를 원용할 수 있게 됨
- 법정형이 동일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보다 감경 영역의 하한과 기본 영역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엄정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

#### ▣ 2019. 10. 25. 제9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였던 소유형 2(반포 등)의 권고 형량 범위 설정 근거

- 기본 영역의 상한, 가중 영역 및 감경 영역
  - 선고형량의 분포, 소유형1과의 차등 등을 감안할 때, 기본 영역의 상한을 징역 2년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을 징역 3년으로, 감경 영역을 징역 4월~10월로 정함
- 기본 영역의 하한
  - 유포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위하여 하한을 높게 설정할 필요

가 있고, 촬영죄에 대한 하한을 징역 6월로 정하므로 그보다 죄책이 무거운 배포죄에 대한 하한을 징역 8월로 정함

## 나. 소유형 2(반포 등)

### 1) 법정형 동일 성매매범죄군 형량 범위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7년↓, 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10월	8월-1년6월	1년-3년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7년↓, 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10월	8월-1년6월	1년-3년

### 2) 선고 형량

▣ 양형자료 조사결과 (2014. 1. 1.~2018. 12. 31. 선고 단일범)

전체	실형	집행유예	합계
인원	6	13	19
%	31.6	68.4	100

실형	형량(개월)																			합계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2	24	30	36	42		54
인원	-	-	-	-	2	-	1	-	-	1	-	-	-	1	-	1	-	-	-	-	6
%	-	-	-	-	33.3	-	16.7	-	-	16.7	-	-	-	16.7	-	16.7	-	-	-	-	100

집행 유예	형량(개월)										합계
	2	4	5	6	8	9	10	12	14	18	
인원	-	1	-	4	3	-	1	2	-	2	13
%	-	7.7	-	30.8	23.1	-	7.7	15.4	-	15.4	100

▣ 분석

- 평균 형량 = 10.32개월(실형 12.33개월, 집행유예 9.38개월)
- 5년간 총 19건, 연평균 3.8건 불과 → 표본 극소수

※ 다만,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5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양형자료 조사결과는 제한된 범위에서 참고 가능

3)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불법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단순 촬영행위보다 일반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더 크게 되므로, 비록 양자의 법정형이 같지만 죄질이 더 무거운 소유형2의 각 영역별 권고 형량 범위를 소유형1보다 다소 상향하는 것이 타당함

다. 소유형 3(영리 목적 반포 등)

1) 법정형 동일 또는 유사 성범죄군 형량 범위

▣ 형법 제297조(3년↑)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 4항(3년↑ / 3-5천만 원)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2) 선고 형량

-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7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징역), 양형 자료 조사결과는 의미가 없게 됨

3)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소유형 3(배포 등)과 법정형이 동일하고 행위 태양이 유사하므로, 그 권고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소유형 4(소지 등)

1) 법정형 동일 또는 유사 범죄 형량 범위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3년↓, 3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6월	4월-10월	8월-1년6월

▣ 형법 제271조 제1항(3년↓, 5백만 원↓)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기준	-8월	2월-1년	6월-1년6월

▣ 형법 제283조 제1항(3년↓, 5백만 원↓)

-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2) 선고 형량

- 신설 범죄로 양형자료 조사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3)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소지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 중 성매매 알선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을 감안하여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상향 조정함

마. 상습 촬영·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로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상습범에 관한 권고 형량 범위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에 따라 추가된 상습 촬영·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이 타당함

4.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형량 범위 검토

가. 소유형 1(편집 등) / 소유형 2(반포 등)

1) 법정형 동일 성매매범죄 등 형량 범위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3항(5년↓, 3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강요 <sup>2)</sup>	-6.67월	5.33월-1년	8월-2년

▣ 형법 제261조 제1항(5년↓, 1천만 원↓)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2) 제1유형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양형위원회, 양형기준(2020), 422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특수폭행	2월-1년2월	4월-1년10월	6월-2년4월

▣ 형법 제276조 제1항(5년↓, 7백만 원↓)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	-8월	6월-1년	8월-2년

## 2) 선고 형량

- 신설 범죄로 양형자료 조사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 3)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	반포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2019. 10. 25. 제9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카메라등이용 촬영 범죄 중 소유형 1(촬영, 당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영역은 ‘8월 이하’, 기본 영역은 ‘6월~1년 6월’, 가중 영역은 ‘10월~2년 6월’로 정함
-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중 소유형 1(편집 등)과 소유형 2(반포 등)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중 소유형 1의 권고 형량 범위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종전 심의 결과를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하는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직접 촬영물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동일한 편집 등 범죄와 반포 등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반드시 달리할 필요는 없음

■ 2019. 10. 25. 제9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였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소유형 1(촬영)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설정 근거

- 기본 영역의 상한과 가중 영역의 상한
  - 선고형량의 분포, 유사 법정형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기본 영역의 상한을 징역 1년 6월로, 가중 영역의 상한을 징역 2년 6월로 정함
- 기본 영역의 하한
  - 양형자료조사 결과 징역 6월이 44.8%로 가장 많은 선고가 이루어지는 형량에 해당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향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실무의 추세를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 있음
- 감경 영역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징역 5년↓)에 대한 종전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감경 영역의 상한을 징역 10월로 정하게 되면 양형실무의 92.2% 상당이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 가중 영역의 하한
  - 가중 영역의 하한을 징역 8월로 정하면 현행 양형실무의 약 20%

정도가 추가적으로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소 많아짐

- 규범적 관점에서 가중 영역의 하한을 징역 10월로 정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양형을 권고

## 나. 소유형 3(영리 목적 반포 등)

### 1) 법정형 동일 성매매범죄군 형량 범위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7년↓, 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10월	8월-1년6월	1년-3년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7년↓, 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10월	8월-1년6월	1년-3년

### 2) 선고 형량

- 신설 범죄로 양형자료 조사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 3)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소유형 2(반포 등)와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그와 동일하게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함이 타당

#### 다. 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로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상습범에 관한 권고 형량 범위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이 타당함

## 5.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형량 범위 검토

### 가. 소유형 1(협박)

#### 1) 법정형 동일 협박범죄, 성범죄 형량 범위

#####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1년↑)

-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5	보복목적 협박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1년↑, 1천만 원~3천만 원)

- 성범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

##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장애인 위계·위력추행	9월-1년6월	1년3월-2년6월	2년-3년

### 2) 선고 형량

- 신설 범죄로 양형자료 조사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 3)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9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보복 목적 협박 범죄보다 죄질이 더 나쁘므로, 보복 목적 협박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보다 더 높게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할 필요 있음
-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성범죄적 요소도 있으므로, 장애인 위계·위력 추행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하면서 그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타당함

## 나. 소유형 2(강요)

### 1) 법정형 동일 범죄 형량 범위

####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3년↑)

-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누범 특수상해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3년↑)

-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누범 특수공갈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3년↑, 1천만 원~3천만 원)

- 성범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2) 선고 형량

- 신설 범죄로 양형자료 조사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3)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강요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정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법정형이 같은 소유형 3(배포 등), 소유형4(아동·청소년 알선)의 권고 형량범위보다도 기본 영역, 가중 영역의 하한을 일부 상향함

다. 상습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 ⇨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로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상습범에 관한 권고 형량 범위와

같은 이유로 상습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이 타당함

## 6.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형량 범위 검토

### 가. 양형자료조사결과

#### ▣ 전체

단위: 명, %, 월

분류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1	2	3	4	5	6	8	10	12	18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수	1	5	2	49	7	97	16	11	7	1	196	5.97
	비율	0.5	2.6	1.0	25.0	3.6	49.5	8.2	5.6	3.6	0.5	100.0	

#### ▣ 실형

단위: 명, %, 월

분류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1	2	3	4	5	6	8	10	12	18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수	1	3	1	7	2	16	3	5	4	1	43	6.60
	비율	2.3	7.0	2.3	16.3	4.7	37.2	7.0	11.6	9.3	2.3	100.0	

#### ▣ 집행유예

단위: 명, %, 월

분류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수	2	1	42	5	81	13	6	3	153	5.79
	비율	1.3	0.7	27.5	3.3	52.9	8.5	3.9	2.0	100.0	

### 나.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 가중 영역의 상한, 감경 영역의 하한
  - 선고형량의 분포 등을 감안할 때, 가중 영역의 상한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감경 영역의 하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 기본 영역
  - 양형자료조사 결과 6월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이 32.7%임
- 감경 영역의 상한
  - 법정형 등 고려함. 만약 상한을 8월로 정하게 되면 양형실무의 90.4%가 감경 영역에 포섭되는 문제 발생
- 가중 영역의 하한
  -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면서도 법정형 등 감안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가중 영역 하한보다 낮게 설정함이 바람직함

## V. 양형인자

###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 ▣ 과거에 실제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를 추출하고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 양형인자를 추출하거나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규범적인 고려 요소도 적절하게 반영함

##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li> <li>•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li> </ul>
일반 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 유형)</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불원</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신뢰관계 이용</li>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1) 특별감경인자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강도, 약취·유인, 절도, 공갈, 성매매 등 다수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
- 조직적인 범행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 있음

- 하급심도 주된 감경사유로 참작

■ 농아자

- 모든 범죄에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 이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여야 할 행위자적 요소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형량 범위를 권고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함
- 다만 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음주 또는 약물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고의적인 심신미약 상태 야기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범죄 양형기준, 명예훼손 양형기준과 같은 서술식 기준을 추가
- 서술식 기준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자수

- 모든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
-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 면제 사유(형법 제52조 제1항)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 부합함

2)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횡령·배임, 증거인멸·증인은닉, 사기, 증권·금융범죄, 공갈,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도주·범인은닉, 명예훼손 등 다수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
- 다만, 다른 범죄에서의 정의 규정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를 추가함

-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위계·위력, 이익 제공」도 포함
  - 사귀는 등 친밀한 관계에서 승낙 촬영도 빈번할 수 있기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 태양이라고만은 할 수 없음
  - 진의에 기초한 승낙 아닌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이익 제공이 수반된 이상 죄질이 무거움

####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형법 제51조 제3호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의 동기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 제5호는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할 요소로 범행의 동기를 규정하고 있음
- 약취·유인, 상해, 폭행, 협박, 방화, 체포·감금, 강요, 업무방해, 손괴, 명예훼손에서 특별가중인자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체포·감금, 강요, 업무방해, 손괴 등에서 특별가중인자

- 성범죄는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특히 범행에 취약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되기 어려움
-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 규정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 ① 제작, 수입, 수출하거나, ②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학생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③ 판매·대여·배포·제공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④ 공연히 전시, 상영하거나, ⑤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횡령·배임범죄, 명예훼손범죄, 사기범죄, 지적재산권범죄, 공갈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등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성범죄, 성매매범죄에서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라는 사유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대부분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임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 또는 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호의 기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대상인 아동·청소년인 장애인을 또는 위 아동·청소년인 장애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성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 방해에서 특별가중인자임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대부분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임
- 동종의 범위
- 성범죄와 유사한 성격임
- 성매매범죄는 ① 왜곡된 성 의식의 발로이자, ②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이 범죄와 동종으로 포섭 가능함

나. 일반감경인자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대다수 범죄에서 일반감경인자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듦
  - 사회·국가 법익에 대한 범죄: 종전 ① 사회·국가 법익에 대한 범죄 대부분과 ② 개인 법익에 대한 범죄 중 19세 미만에 대한 성매매 강요 등에서 일반감경인자
  - 범사회적 엄벌요청: 처벌 강화 여론에 따른 최근 법정형 대폭 상승 및 구성요건 확장 취지 존중
- 성범죄의 처벌불원 정의 규정을 차용하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정의 규정을 기재

■ 진지한 반성

- 대부분 범죄에서 일반감경인자
- 해당 및 반영 여부는 충실한 양형심리를 기초로 판단 가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처벌 전력이 없어도 성범죄는 암수가 많고, 다수 범행으로 일괄

처벌할 경우 또한 존재: 이러한 경우에까지 감경인자로 기능함은  
부당

- 최초로 정의 규정을 신설

## 2) 일반가중인자

###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인자의 경우 다른 가중요소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가중인자로 반영함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제(師弟)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성범죄에서 일반가중인자 중 행위자/기타 인자임
- 특별가중인자로서 신고의무자 등의 범행보다는 비난가능성 낮음

###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성범죄 등 다수범죄에서 일반가중인자
- 동종의 범위
  - 성범죄와 유사한 성격임

- 성매매범죄는 ① 왜곡된 성 의식의 발로이자, ②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이 범죄와 동종으로 포섭 가능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성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에서 일반가중인자
-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시도하거나, 부적절하게 합의를 종용할 경우 피해자에게 압력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불원</li> <li>•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 유형)</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동일한 양형인자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의 양형인자 설명이 그대로 적용됨

### 1) 특별감경인자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수범죄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인자를 특별감경인자 취급
- 성범죄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는 표현은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부적절할 수 있어,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감경인자를 발굴함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

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처벌불원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양형에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 있음
- 다만, 처벌불원에 이르지 못한 ‘상당 금액 공탁’,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요소라는 점에서 특별감경인자는 물론 일반감경인자에서도 제외함

####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2) 특별가중인자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촬영**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촬영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③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 유형)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앞서 언급한 대유형 범죄와 동일한 양형인자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위 각 범죄에서의 양형인자 설명이 그대로 적용됨

### 1) 특별감경인자

####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특별가증인자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 **편집, 합성, 가공한 것임을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편집, 합성, 가공이 정교하게 이루어져 편집 등 사실을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편집, 합성, 가공의 정도가 조잡한 경우와 양형상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

###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li> <li>• 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앞서 언급한 대유형 범죄와 동일한 양형인자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위 각 범죄에서의 양형인자 설명이 그대로 적용됨

## 1) 특별감경인자

### ▣ 협박,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협박범죄, 강요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로 반영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협박, 강요범죄의 성격을 가지는 이 유형 범죄의 양형인자로도 반영함이 타당

## 2) 일반가중인자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협박범죄, 강요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로 반영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협박, 강요범죄의 성격을 가지는 이 유형 범죄의 양형인자로도 반영함이 타당

## 바.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앞서 언급한 대유형 범죄와 동일한 양형인자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위 각 범죄에서의 양형인자 설명이 그대로 적용됨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음란성)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VI. 집행유예 기준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li>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li> <li>○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li> <li>○ 약물중독, 알콜중독</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자수</li> <li>○ 진지한 반성</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처벌불원</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2.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p>주요 참작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또는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처벌불원</li> <li>○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li> </ul>
<p>일반 참작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li> <li>○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li> <li>○ 약물중독, 알콜중독</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자수</li> <li>○ 진지한 반성</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처벌불원</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li> <li>○ 약물중독, 알콜중독</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자수</li> <li>○ 진지한 반성</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4.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처벌불원</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li> <li>○ 약물중독, 알콜중독</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자수</li> <li>○ 진지한 반성</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피고인이 고령」 : 일괄 제외

- 종전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대부분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반영함

- 그러나 「고령」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2020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6.1%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일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음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자료집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토론문(김한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이윤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김한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양형기준안 토론회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의 의미

1.1. 1987년 헌법체제와 사회민주화 흐름 속에서 1990년대 성폭력범죄와 피해에 대한 종합적 대응입법(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실현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과 피해에 특화된 특별법제(아동청소년성보호법)로 발전하였으며, 2010년대 이후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 등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보호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에 이르게 된 것도 피해자의 경험에 비로소 주목하면서 가해와 피해의 특성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구조 위에 더 잡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사사법체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디지털 성범죄 현상이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극악스런 형태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문제구조의 일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는 2020년 역대 최대 국민청원이 뼈아프게 지적하는 바다. 특히 국민은 단순히 엄벌을 요구하지 않았다. 신상공개라도 하라는 요구 뒤에는 법원의 양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80>) 아무리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하고 수사과 기소를 거쳐 유죄판결까지 이른다 해도 가해와 피해에 상응한 형벌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는 사실상 오판(誤判)이나 다름없으며, 또한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단의지를 오판

(誤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1.2. 그런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의 마흔두 번째 양형기준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2009년 최초의 양형기준 제정 10년 만에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의 새로운 전환을 알리는 첫 번째 양형기준이 될 수 있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다.

첫째, 특정 범죄 양형기준 제정과정에 대한 유례없는 국민적 관심은 양형위원회가 그 설치목적인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 (법원조직법 제81조의2)하기 위하여 국민여론수렴과 전문연구기능의 기반을 확충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종래 성범죄 내지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대한 비판 내지 불신은 입법자의 처벌의지가 법원과 충분히 소통 내지 공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은 입법기관도 입법도 아닐 것이지만, 국회와 법원 사이에서 입법자와 양형법관이 형벌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해 주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확대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서 신설 범죄나 법정형 변화에 따른 양형자료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 내지 규범적 조정에 의해 선도적 양형기준의 제시를 시도한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이제까지 양형기준이 종래 양형실무를 정형화하여 양형 편차(discrepancy)를 줄이는 방향으로 양형 합리화를 실현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면,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제정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거울삼아 국민과 법관간의 양형인식 격차(divide)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양형 합리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기대된다. 물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은 제정과 동시에 기준수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경험에 대한 인식과 국민적 관심의 변화발전에 따라 입

법과 양형 또한 계속해서 변화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 2. ‘디지털 성범죄’ 범죄군 명명(命名)의 의미

2.1. 제127차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 회의는 제95차 양형위원회 회의(2019.6.10.)가 양형기준 설정대상으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군 명칭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하였다. 설정 대상 범죄의 범위, 디지털 기기가 아닌 범행 수단의 존재 가능성, 디지털 성범죄 개념 정립에 혼동을 줄 우려가 그 근거다. 양형위원회 제97차 회의(2019. 10. 25.)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어서 제100차 양형위원회 회의(2020.2.17.)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묶어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133차 전문위원단 회의는 범죄군 명칭에 관하여 재검토하였다. 양형위원회 결정에 따라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라면 범죄군 명칭에 대한 다수의견은 죄명을 단순 나열한 ‘아동·청소년음란물·신체촬영·통신매체음란범죄’였다. 그러나 전문위원단은 범죄군 명칭에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사용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다수의견을 변경하였다. 즉 국민적 관심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상징성이 있고, 향후 디지털 이용 정보통신망 범죄 등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시 제103차 양형위원회 회의(2020.7.13.)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이 신설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묶어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제135차 전문위원단 회의는 범죄군 명칭을 재검토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명칭을 택하는 다수의견과 반대의 소수의견으로 나뉘었다. 다수의견의 근거는 상징성과 확장성 외에도 이미 다른 국가기관과 언론,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념 혼란 여지가 크지 않고, 범행 수단으로 대부분 디지털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방식의 사용으로 인한 반복 재생, 광범위한 배포 등이 주된 사회적 문제가 된 점을 범죄군 명칭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양형위원회 제104차 회의(2020.9.14.)는 범죄군 명칭을 ‘디지털 성범죄’로 의결하였다. 미루어 보건대, 범행수법 및 광범위한 피해확산 양상 측면에서 기존 성범죄와 다른 특성의 범죄라는 점과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확산과 범죄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설명자료 8면.)

2.2. 범죄군 명칭을 둘러싼 그간의 의견불일치와 의결변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최초 양형기준 설정대상으로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협소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설정대상범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정되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개념정립에 혼동을 줄 것을 우려했지만, 정작 피해자의 경험에 기하여 사회적 의제화된 디지털 성범죄 개념을 소극적으로 대함으로써 혼란에 처한 것은 양형위원회다. 디지털 성범죄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종래 성범죄와 구별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폭력적 특성을 인식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이는 양형위원회 제98차 회의(2019.12.9.)에 보고된 전문위원단 다수의견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행사나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지 않고, 그 행위태양이 통상



적인 폭력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성폭력이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과 디지털매체가 매개된 가해 및 피해 정도와 그 현실이 극히 폭력적이라는 점에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있다. 통상적인 물리적 행사나 신체적 접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연쇄 안에서 가해와 피해가 가중되는 형태의 폭력인 것이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별개의 양형기준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결국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라는 명칭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 (법원조직법 제81조의2)하기 위한 바람직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제100차 양형위원회 회의(2020.2.17.)에 이르러서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으로 삼았다. 이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했었기 때문인데, 시기적으로 보건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종래 양형기준 설정과정에 비해 양형에 관한 국민의식이나 여론수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물론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정법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개념정의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적용범위인 각 5개 범죄를 제시할 뿐이다. 다만 그 특징을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공간에서의 다양한 범행방법, 범행특성상 피해확산과 범죄빈도급증, 그리고 피해회복의 어려움 세 가지로 제시한다. (설명자료 1면.) 양형위원회는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디지털 양형기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현 단계 한국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와 피해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청소년 보호를 디지털 성범죄 주요내용으로 포섭하게 되었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개념정의에도 부합하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인지(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543>)

셋째, 양형기준안 마련 과정 중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2020년 3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2020년 5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불법촬영소지시청죄, 상습카메라이용촬영죄(2020년 5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 5항), 상습아동성착취물 제작죄 (2020년 6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7항)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죄(2020년 5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내지 3항)와 아동성착취물죄(2020년 6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2항, 3항)의 법정형(징역형)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신설된 범죄나 변경된 법정형에 따른 양형실무가 당연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큼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양형자료가 부재함을 뜻한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최대한 참고하고, 엄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권고형량범위 상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범적 조정을 하였다. (설명자료 11, 16, 18면.)

2.3. 근래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관심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종래 양형실무자료에 기초해 설정된 양형기준은 비판대상이었던 양형관행을 오히려 고착시킨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한다 해도 과연 국민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양형관행에 실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다. 특히 이제까지 양형기준 형량범위 설정방식에 따라 종래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별도로 제시한들 앞으로도 형량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양형기준안은 오히려 종래 양형실무자료의 부재상황에서 일정한 정책적 판단과 규범적 조정을 통해 ‘선도적’ 기준을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양형위원회가 허위영상물 반포 등 범죄를 동 양형기준안에 포함시키면서, 신설범죄로서 양형사례가 존재하지 않아도 법관에게 형량범위, 양형인자를 안내 또는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다. (설명자료 6면)

즉 양형기준은 기존 실정법 규정과 이에 따른 양형실무를 정형화하여 양형편차를 합리화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신설 또는 개정 법 규정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규범적 조정 등의 방식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으로 인도함으로써 법관과 국민간의 양형인식 격차를 줄이는 양형합리화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 3. 디지털 성범죄의 보호법익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보호법익을 아동성보호와 건전한 성풍속 보호, 그 밖의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의 보호법익을 소극적 의미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본다. (설명자료 1-2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형사법은 1990년대 이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불평등하게 실현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취약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

정권이나 자유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점점 더 중시하고 있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보호를 고통스런 피해경험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헌법 10조의 시대’라는 요청에도 부합된다.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이며, 그 중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을 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내용이기도 하거니와, 성적 행동과 관계에 대한 폭력적 침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소극적 권리내용이기도 한 것인데, 이는 형법을 통해서 보장되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의 기본내용으로서 독자적 기본권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형법적 실현은 아동성착취든, 아동을 표현한 성적 영상물이든, 원하지 않는 촬영이든, 촬영물을 유포하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든, 촬영물을 소지시청하든 성인의 아동에 대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뿐만 아니라 자기결정이 가능케 할 인격적 사회적 자유까지 침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할 때 가능하게 된다. 사이버공간과 디지털매체가 매개된다고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덜하지도 않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와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사이버공간 안에서 인격과 자유가 현실공간에서의 인격과 자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4. 디지털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죄

아동성착취물 (child pornography) 개념에 대한 이해는 범죄행위 특성과 양

형 판단의 기초가 된다. 양형기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입법자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아동성착취물은 아동을 이용하는 음란물(pornography)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물이며, 제작과 유포, 시청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성학대(sexual abuse)가 된다.

2020년 6월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호와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였다. 개정이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물론 개정 이전에도 해당 조문은 단지 음란물이라는 표제를 사용하였을 뿐 조문내용에는 음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성풍속에 관한 표현물 정도로 가볍게 해석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이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동법 제2조 제1항 1호) 또한 헌법재판소는 제11조의 취지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 24, 2013헌바85 결정 )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안은 해당 범죄가 아동·청소년 보호에 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본다. (설명자료 1면) 막연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자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구별 없이 아동성착취물의 내용이라 본다. 이는 ‘건전한’ 성풍속 보호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아동은 어떤 형태로든 성착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명사회의 최소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제2조 (c))

##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권고형량범위

5.1. 종래 권고형량범위 설정기준은 양형실무 통계분석을 기초로 형량범위를 설정하되,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부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조정의 근거는 해당 범죄의 특수한 사항일 것인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관하여는 범죄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 비판과 관심이 높다는 정책적 고려와 법정형의 가중이라는 규범적 고려다. (설명자료 10-11면.) 신설범죄나 법정형 변화의 경우 당연히 이를 적용한 양형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할 양형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설명자료 11면.)

그러나 본 양형기준안이 인정하는 바,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의 성범죄와 전혀 다른 형태·성격의 범죄이기 때문에(설명자료 8면.) 유사한 범죄를 비교하기 쉽지 않고, 법정형이 동일하다고 해서 범죄특성이 동일한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종래 양형실무뿐만 아니라 법관대상조사, 국민참여형 모의양형컨퍼런스, 양형인식연구 등 다양한 양형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5.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형량범위 - 소유형 1 (제작 등)

동 유형의 형량범위 검토에서는 법정형이 동일한 성범죄군으로서 13세 이상 강간죄 중 청소년강간과 청소년위력간음죄를 타당하게 참고하였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범죄라는 점에서는 13세미만 강간죄의 성범죄기준도 참고해야 하지 않은지 의문이 남는다.

양형자료는 전체 15건(실형 3건, 집행유예 12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13건이 모두 법정형 하한을 작량감경한 30개월이어서 평균형량이랄 것도 없는데, 법관대상설문조사 결과는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이러한 양형분포만으로는 형량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고충이 이해된다. (설명자료 12-13면.) 다만 양형자료상의 평균형량은 종래 처벌불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상당부분 고려되었었던 결과이므로, 본 양형기준안에서는 달리 판단해야 마땅하다.

참고한 현행 성범죄기준과 양형자료, 법관대상조사와 해당 양형기준안의 권고형량범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	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
13세미만 아동강간	6년-9년	8년-12년	11년-15년
양형자료	2년6월-3년		
법관대상조사	2년6월-3년6월	2년6월-5년	4년-7년
양형기준안	2년6월-6년	5년-9년	7년-13년

본 양형기준안은 유사성범죄 권고형량범위와 규범적 조정 필요성을 감안하

여 각각 감경영역의 하한은 법정형하한 5년에서 특별감경인자를 고려할 때 2년 6월을 하한으로, 기본영역은 참고한 13세 이상 청소년강간의 하한인 5년으로, 가중영역은 참고한 13세 이상 청소년강간의 하한보다 다소 높은 7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감경영역의 상한 6년은 13세 미만 아동강간의 하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본영역의 상한은 참고한 13세 이상 청소년강간의 상한보다 다소 높게 설정하였다. 가중영역의 상한은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이고 특별가중조정을 할 경우 상한 2분의 1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3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성착취물 제작의 죄질이 청소년강간에 비교하여 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범죄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권고한다(설명자료 14면.)는 의미를 좀 더 실현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엄정한 양형의 권고가 참고한 성범죄 양형기준보다 다소 높게 (1년) 설정하는 정도로 충분한지의 여부다. 종래 양형자료에 나타난 바, 거의 대부분의 양형판단은 법정형 하한의 작량감경(2년 6월)이다. 본 기준안과 같이 감경영역 하한을 2년 6월로 한다면 여전히 법관은 양형기준 하향이탈의 부담 없이 종래 실무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종래보다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고자 한다면 감경영역 하한을 상향함으로써 양형기준 이탈의 경우 판결서에 감경의 이유를 적도록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하는 부담이라도 지워야 한다. 더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관대한’ 양형실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경우라면 감경영역 하한을 선택하는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형량범위를 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양형기준안은 종래 양형자료상의 평균형량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던 처벌불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엄정한 양형권고의 취지를 살린다면 감경영역의 하한을 최소한 참고한 13세 이상 청소년강간의 하한인 3년으로 상향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맞추어 가중영역의 상한도 13세 미만 아동강간의 상한인 15년까지



상향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5.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형량범위 - 소유형 2 (영리목적 판매 등)

당해 범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양형자료 조사결과나 법관대상조사가 무의미하게 되었고, 양형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법정형이 유사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양형위원회의 난처함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개정 전까지 영리목적 판매유형은 제작유형에 비해 법정형이 낮은 만큼 죄책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가중된 법정형에 따른 양형실무가 형성되기 전인만큼 규범적 조정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설명자료 16면.)도 이해할 만하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 배포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면서 성매매범죄 기준을 참고했다는 점은 난감하게 다가온다. 무엇보다 입법자의 법개정 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영리목적 유포가 실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자행하면서 이를 촬영 제작한 가장 죄질이 무거운 경우를 상정하여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을 둔 점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죄책에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영리목적의 판매배포는 피해의 지속성과 확산성 측면에서는 제작 못지않다. 더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소지시청- 판매유포- 제작의 각 단계는 죄질이 점증하는 형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가 다른 단계를 전제하면서 필수적으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즉 소지 시청하는 자가 없으면 판매 유포하는 자가 있을 리 없고, 판매 유포하는 자가 없다면 제작하는 자도 없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비로소 입법자는 영리목적 판매 범죄를 비롯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행태에 대한 평가를 법정형을 통해 결단한 것인데, 이러한 점이 양형기준을 통해 양형법관들에

게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참고한 현행 성범죄기준과 해당 양형기준안의 권고형량범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13세 이상 장애인 유사강간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아동청소년 성구매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영업으로 성구매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양형자료	-		
법관대상조사	-		
양형기준안	2년6월-5년	4년-8년	6년-12년

본 소유형2(영리목적 판매 등)의 형량범위안은 소유형1(제작 등)의 권고형량범위인 2년6월-6년/5년-9년/7년-13년에서 감경영역 하한을 동일하게 둔 채 각 영역의 상하한을 단순히 1년씩 낮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근거는 단지 소유형1보다 죄책의 정도가 다소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명자료 16면.) 그러나 입법자의 의사는 그 죄책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법관에게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설명자료 6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범죄에 대해서도 타당할 것이다. 물론 감경영역의 하한도 소유형 1에 관하여 지적했던 이유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 5.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형량범위 - 소유형 5 (구입 등)

해당 유형범죄 역시 당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되고 선택형으로서 벌금형도 폐지되면서 양형자료 조사결과나 법관대상조사가 무의미하게 되었고, 양형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법정형이 유사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면서 장애인추행범죄 기준을 참고해 죄책의 정도를 감안하여 다소 하향하는 방향으로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했다(설명자료 19면.)는 설명은 또한 난감하다. 다시금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참고한 현행 성범죄기준과 해당 양형기준안의 권고형량범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13세 이상 장애인 위력추행	9월-1년6월	1년3월-2년6월	2년-3년
양형자료	-		
법관대상조사	-		
양형기준안	6월-1년4월	10월-2년	1년6월-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입수 경로와 성착취물의 불법성 정도가 ‘천차만별’이어서 형량범위를 다소 넓게 정해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였다(설명자료 19면.)는 것인데, 참고한 13세 이상 장애인 위력추행의 형량범위보다 다소 낮게, 그리고 동 양형기준안의 카메라이용촬영물의 구입·소지·시청 유형의 권고형량범위(-8월/6월-1년/10월-2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에서도 구입·소지·시청의 법정형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중요한 내용을 수

용한 것이다. 즉 시청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취향이 아니라 타인의 범죄피해를 죄의식 없이 소비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악순환하도록 하는 핵심 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입수경로가 어떠한지 시청하는 성착취물은 음란물이 아니며 성폭력물로서의 불법성은 엄연한 것이어서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보다는 당해 범죄유형의 엄중한 처벌필요성을 반영하도록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해야 마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경영역의 하한에 관하여 앞서 지적했던 이유와 동일하게 법정형하한 1년에서 특별감경인자를 고려할 때 6월보다는 높도록 참고한 기준인 장애인 추행의 하한인 9월로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5.5.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국민의 관심은 권고형량 기본영역의 상하한 범위, 감경영역의 하한, 가중영역의 상한에 모일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다. 왜냐하면 디지털 성범죄의 죄질과 피해경험에 관한 국민의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관대한’ 양형 내용이 비판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신설 양형기준안을 통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과소처벌 관행을 또다시 답습할 것이라는 불신이 가장 엇갈리는 지점이 권고형량범위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기본영역을 양형법관이 아닌 국민 관점에서 보면, 법관이 해당 디지털 성범죄에 마땅한 형량에 대한 기본 이해를 어디부터 출발해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다. 감경영역 하한은 법관이 이탈 소명의 부담 없이 관행대로 감경을 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메시지다.

따라서 기본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낮추어 잡고 범위를 넓히는 방식, 감경 형량범위 하한을 법정형 하한에 작량감경을 고려한 수준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한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엄중처벌에 대한 입법자, 근본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 의사를 수용하기 보다는 합리적 양형판단

을 명분으로 오히려 종래 디지털 성범죄 양형태도 변화를 선도할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법관에게 전달하는 셈이 될 것이다.

## 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인자

### 6.1. 감경인자

특별감경인자로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타당하다. 다만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폐기한 경우’만이 ‘실질적’ 조치에 상응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 이후에는 사실상 완전 삭제·폐기가 어렵고 또 그 여부를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포전 즉시 폐기는 실질적 조치로서 특별감경인자 인정이 가능하겠지만,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일반감경인자 정도로 인정될 필요성이 있다.

본 양형기준안에서 평가할 만한 성과는 일반감경인자로서 처벌불원과 형사 처벌 전력 없음이다.

종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의 내용을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상세히 규정하면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본 양형기준에서는 범사회적 처벌강화 여론에 따른 법정형 대폭 상승의 취지를 존중하여 일반감경인자로 인정한다. (설명자료 42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소지·시청자까지 포함한다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벌불원이 애초 가능하지 않기도 하다.

또한 본 양형기준안의 ‘처벌불원’에 대한 평가는 일찍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이 성인대상 성폭력법제의 개선을 선도했듯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선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법적·사회적 의미인지,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누가 무엇을 원치 않는다는 것인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인가 중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인가.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인가. 용서하겠다는 것인가. 대개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관계와 절차에서조차 빨리 벗어나고 싶어 뿐이다.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

또한 본 양형기준안은 일반감경인자로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한 정의규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당연하게도 단지 처벌전력이 아니라 해당 범행 이전까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규정 또한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에도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 6.2. 가중인자

특별가중인자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인터넷 등 전파성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고유한 특성 그 자체인 바 특별가중인자로 거듭 인정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수법이 디지털 매체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그러한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명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설정으로 보인다. 또한 ‘고도의 지능적 방법 동원’이나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 하는 경우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살펴보면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곧 지능적이거나 전문적 수법을

요한다 오해할 것은 아니어서 범행수단과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 외에는 그저 사악할 뿐 지능적이지도 못하고 전문적이지도 않은 단순하되 집요한 수법이 대부분이며, 그 자체로 ‘매우 불량한 경우’라 할 것이다.

특별가중인자로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소위 리벤지 포르노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절히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는 어떤 내용인지 의문인데, 구입·시청은 당연히 해당될 것이나, 제작이나 영리목적판매 자체를 즐겨서 저지르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법관으로 하여금 특별가중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 7.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와 긍정적 참작사유, 주요 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는 가중인자와 감경인자, 특별인자와 일반인자의 내용과 유사하다.

다만 양형인자에는 없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피고인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초래, 범행 후 증거은폐 사유는 집행유예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 일반양형인자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인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에 비해 일반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에 둔 것도 일관성 있는 판단이다.

그런데 본 양형기준안에서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를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평가한다면,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도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보다는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 8. 결론

첫째, 종래 성범죄와 구별되며 또한 구별되어야 마땅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 및 피해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은 양형자료의 부실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물론 입법단계에서의 이해부족에 따른 부담을 양형위원회에만 짐 지울 수는 없겠으나, 국민과 입법자와 법관 사이에서 양형편차 뿐만 아니라 양형인식격차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특히 양형자료 확충을 위해서는 양형실무 뿐만 아니라 법관의견조사, 국민참여형 양형컨퍼런스와 양형의식 및 실태연구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양형자료를 양형실무 통계분석에만 의존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경우처럼 단순히 법정형이 유사한 종래 기준에 ‘체계적’으로 맞춤으로서 양형기준의 변화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종래 양형관행과 양형기준 설정방식을 고착시킬 뿐인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종래 관대한 양형에 대한 국민의 상식적 비판을 수용한 양형기준안이 라면 권고형량범위의 가장 하한인 감경영역 하한은 양형법관에게 하향이탈의 소명부담을 지울 수 있는 선에서 정해져야 마땅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이윤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

이윤정(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는 기사를 오늘 접했습니다.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에 대해 최종적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던 것, 그 사건에서 검찰의 구형이 3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타 다른 전통적인 성폭력범죄와 다른 양상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해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용이하기도 하고, 온라인 세상의 익명성 뒤에 숨어 가해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저항감도 적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는 결코 낮지 않으며 무엇보다 물리적인 폭력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로 인한 가해행위가 무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카메라(카메라가 달린 핸드폰)를 손에 들고 다니기 시작하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되고, SNS 등으로 정보를 편하게 전파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여성계,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의 촉구가 있었음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일한 대응(불법 영상물로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 된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의 경우 폐쇄 운동이 있는 지 17년 만에 겨우 폐쇄된바 있습니다)과 낮은 형량이 유지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한하게 확산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범죄가 아닌 심각하게 봐야 할 범죄로 바뀌어 가고 있고, 이 유형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바로 보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 과정에서 많은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성 약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중에 대한 인식

우리는 그간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는 미명하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성인의 성과 마찬가지로 다루면서 상황판단,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쉽게 착취 대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세간에 오르내린 사건만 언급하더라도 지적 능력이 일곱 살 아동 수준에 불과한 청소년이 성폭행 당한 후 얻어먹은 떡볶이와 제공받은 숙박이 화대로 인정되어 성폭행사건이 아닌 성매매사건이 되기도 하고, 여중생과 40대 학원 원장과의 성관계에 폭행이나 협박 등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고 했고, 여중생이 부모 뺨인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연예인을 시켜 줄 수 있다는 말에 가까워져서 성관계를 맺고 가출하여 출산까지 한 것은 사랑해서 한 관계라고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이 외국 입법례 수준으로 상향되기는 하였지만

그 동안 우리 법제상 중·고등학생은 술, 담배를 살 수도 없고, 부모님 동의 없이는 알바도 할 수 없으며, 노래방도 못 가고, 야한 영화도 보면 안 되는 데다가, 누가 괜찮은 정치인인지 판단해서 투표할 수도 없는 나이이지만 성관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사회와 법의 이러한 태도는 어린 청소년에 대해 다른 영역에서와 달리 유독 성적 행위의 당사자, 상대방으로서의 능력만 인정해 준 꼴이고, 성인 남성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쉽게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으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도록 해서 피해자가 아닌 사실상 처벌이나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굳이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지적인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판단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성인에 대한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동의’나 ‘반항’ 여부를 판단하고,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소위 ‘까진 애’ 취급을 하면서 그 동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손쉽게 저지른) 성범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을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이 일반적으로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됨으로써 건전한 성의식을 해칠 공익상의 해악 때문에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앞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기존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청소년성보호법상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점에 대한 인식이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형의 정책적인 방향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성보호법상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 가. 행위유형의 분류와 형량 범위

먼저 행위유형에 따른 처분기준을 법정형과 비교해보면, 양형기준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각 항에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아래와 같이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법정형	구 법정형 <sup>1)</sup>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수입,수출 (제11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2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광 고,소개/전시,상영 (제11조 제2항)	5년 이상	10년 이하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 12년
3	배포,제공 (위 목적),광고,소개,전시,상영 (제11조 제3항)	3년 이상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정황인지)아동·청소년 알선 (제11조 제4항)	3년 이상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5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1년 이상	1년 이하 2천만원 이하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상습 - 제작,수입,수출 (제11조 제7항)	1에서 2분의1 형기 가중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먼저 이와 같은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는 일응 대분류 방법에서는 타당하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0.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법정형

다고 생각되나, 디지털 성범죄의 행위 태양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류 하에서 좀 더 세부적인 유형의 분류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착취물의 범위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말하는데(제2조5호) 이러한 매체만으로 구별해도 사진인지 영상물인지 게임물인지에 따른 행위유형의 심각성이 다르고, 행위 태양도 예를 들면 배포의 경우 어떤 전파력을 가진 매체를 통한 배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의 행위유형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양형의 형량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되는 바, 구체적인 행위태양의 분류 작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차후에라도 양형의 분류에서, 또는 적어도 양형인자요소로라도 행위태양의 세부 분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형량의 범위에서 2유형의 경우 법정형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점이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타 다른 성폭력 범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성폭행을 한다는 것이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성착취물의 제공과 소비가 사업화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양진호 사건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는 불법 영상물의 게시와 유포에 있어 '장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웹하드 관리자나 사이트 운영자, 헤비업로더, 필터링 업체 간에 유착관계를 맺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가 지하경제에서 한 산업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과 배포를 통한 영리 목적이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영리 목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에 준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하며 2유형의 양형범위의 상한은 더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 나. 양형인자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행위 유형이 더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상의 유형에서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가중감경요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고유한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양형인자가 더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수법의 불량성에서 제작행위와 관련된 불량한 수법과 배포 행위와 관련된 불량한 수법은 구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가중인자로 단순히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거나 ‘신중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한 경우’ 등의 수법은 금융, 재산범죄에서나 전형적인 불량한 수법이지 디지털 성범죄의 불량한 수법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작에서는 ‘고도의 정밀하고 은밀한 카메라 기기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거나 공공장소나 어느 정도 다중의 이용이 허용되는 장소에서의 성적 행위물 촬영인지 탈의실, 화장실칸과 같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장소에서의 촬영인지가 더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가중요소와 관련하여, ①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 ② 피해자에게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인 것, ③ 유포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이거나 피해자의 주변인인 것 등은 별개의 가중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①의 경우에는 제작 관련 행위와 배포 관련 행위 모두에 해당할 수 있고, ②는 특히 제작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③은 배포와 관련된 행위의 가중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가중인자로서 고려하는 점이 당연하지만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형벌의 전제가 되거나 가중사유가 되는 것은 자칫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따른 고통의 경험을 강요하게 되



거나 성범죄 피해자는 의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피해자다움’을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비중 있는 가중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경요소에서의 반성은 반성문의 매수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반성이어야 하고, 법원에 대한 반성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 4. 결론

디지털 성범죄의 태양이 워낙 다양하고, 같은 구성요건이라도 해당하는 행위의 죄질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형의 기준을 만들이기 그 어느 범죄보다 쉽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양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양형심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의 인지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행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미 축적된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행위태양을 분류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 양형기준이 그 기초가 되어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의 만족과 균형 있는 형사사법체계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양형기준의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자료집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서승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양형기준안에 대한 토론문(신진희)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서승희)**



#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 1. 들어가며

황당한 선고 결과를 마주할 때마다, 지금과 반대로 범조인의 70% 이상이 여성인 세계를 상상하곤 한다. 그곳에서 인간의 기본형은 여성일 것이고, 범조인들은 이례적으로 남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 여성의 시선을 기본으로 사건을 이해할 것이다. 그곳의 판결문은 이곳보다 훨씬 더 여성들이 납득하기 쉬운 문장으로 쓰일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의 재판부는 여성들이 겪는 성폭력 경험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살아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활동가로서 듣고 만난 운동적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사실 중 하나는, 수많은 사람이 노력하여 법 개정을 이루어내도 재판부의 의지가 없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재판부는 이미 ‘기울어진’ 사회의 시선대로 사건을 이해했고, 그것을 따로 성찰할 의지나 계기가 없었으며, 그리하여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결을 내려왔다. 이러한 재판부에 필요한 변화는 가해자의 서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서사에 눈을 맞추고 들여다보는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 피해가 일어나는지, 피해의 순간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는지, 피해를 경험한 인간이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들여다보고, 함께 걸을 수 있을 때 모든 법적 용어와 관점은 ‘기울어지지 않은’ 제자리를 찾아

갈 것이다.

## 2.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 가.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의 적정성

일반적으로 성범죄라는 용어는 성폭력 범죄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면 디지털 기기 및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성착취 범죄 피해까지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범위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표현이 비교적 적합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이번 양형기준안을 주제로 진행한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토론회 제목에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sup>1)</sup>

지금까지 디지털 성폭력은 주로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 내왔던 여성들도 불법촬영, 성적촬영물 유포 문제를 중심으로 사안을 다루었다. 정부의 2020년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에서도 보이듯 정책적으로 다루지는 범위도 그러하였다. 당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내용에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①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또한 국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된 소위 ‘N번방 방지법’에서도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 중심으로 개정 및 신설이 이루어졌다.

1) “디지털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2020.10.20.



이번 양형기준안에서는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관련 법률뿐만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이 포함되었다. 본 단체 또한 피해지원 과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자주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범주 안에서 포함되어 다루지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양형위원회가 사용한 디지털 성폭력/범죄라는 용어의 의미를 ‘디지털 기기 혹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정도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에 준하는 의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이용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나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를 행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지점의 고려와 함께, 차후 제13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 과제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추가로 한국적 맥락과는 별개로 국제/국가 간 성폭력 범죄 대응의 맥락까지 고려하며 용어 사용 및 정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용어와 정의를 만드는 과정과 더불어 차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성매매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에서 관련 법률들을 다시 정렬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나. 형량범위의 적정성

이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통해 범죄의 특성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반영하여 기준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있어서 특히 소유형 2(반포)에 대한 형량범위가 피해 실태와 해악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에서 이전과 달리 형량 개선을 분명해 해야 하는 필요성이 가장 높은 핵심적인 양형기준이 바로 소유형 2(반포) 일 것이다.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에 관해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다는 형량범위 설정

기준 고려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라고 본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1항의 촬영과 2항의 반포를 동일한 형량으로 두고 있으나, 유포피해의 심각성과 피해복구의 어려움을 고려하였을 때 촬영죄보다 반포죄의 죄책이 더 무겁다. 불법촬영도 심각한 성폭력이지만 불법 촬영 이후 유포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유포되지 않게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절박한 목표가 되는 이유이다. 현재 양형기준안 형량범위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촬영에 비해 반포에 더 높은 형량을 배정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소유형 3(배포)의 형량범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도 충분하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형량범위는 [기본 2년 6월-6년]이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배포의 형량범위는 [기본 1년-2년 6월], [가중 1년 6월-4년]이다. 본 단체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유포 범죄의 피해자 중 평균 약 75%정도가 성인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배포 범죄 또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촬영물 이용 성폭력, 특히 배포 범죄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배포 범죄에 대해 기존의 양형실무의 반영비율을 낮추어 형량범위를 높여 설정하는 일이 바로 이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의 의미가 될 것이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 소유형 3(영리 목적 반포 등)은 형량범위가 [기본 2년 6월-6년], [가중 4년-8년]이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과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배포 범죄의 형량의 범위를 최소 [기본 1년-4년] 정도까지 높여서 설정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물론 차후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2항의 형량을 1항에 비해 높일 필요가 있겠으나, 현재 처벌법의 미진한 부분을 양형기준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양형인자의 적정성 - 특별히 의미 있는 양형기준

이번 양형기준안에서 특별히 의미 있으며, 앞으로 다른 성범죄의 양형에도 준용하여 반영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감경 요소 관련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해당 범행을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경우일 것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감경인자에서 제외
	- 상담금액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이므로 감경인자에서 제외
	- 낮은 연령, 높은 연령 모두 감경인자에서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경우 감경인자 반영이 아닌 서술식 기준 마련
가중 요소 관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조직적 범행, 전파성이 높은 수단으로 촬영물 유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동종 누범에서의 동종 전과에 성범죄, 성매매범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영리목적의 범행에서 취득한 이득이 다액일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라. 양형인자의 적정성 - 개선 고려가 필요한 양형기준

#####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촬영물/합성·편집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범죄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인자를 특별감경인자 취급</li> <li>- 성범죄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는 표현은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부적절할 수 있어,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감경인자를 발굴함</li> </ul> |
|--|

촬영물/합성·편집물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경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피해가 ‘경미’하다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한 지점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 관점을 반영하고자 하는 양형위원회의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 표현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명시될 경우, 부적절한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을 높인다. 보통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에서 촬영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①촬영 기기의 문제, ②촬영 각도의 문제, ③촬영 시 흔들림, ④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조도, ⑤촬영물의 반복적 복제로 인한 화질저하 등으로 서술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과 환경의 조건으로 인해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감경하는 것은 해당 범죄의 특성을 완전히 잘못 반영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앞선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감경요소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매우 선명한 화질로 적나라하게 촬영되고 유포되어 그 피해가 심각할 때 가중하는 방향이 피고인의 고의성에 부합하는 처분이 될 것이다. 합성·편집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유로 해당 감경요소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   |
|---|
| <p>○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li> <li>-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li> </ul> |
|---|

촬영물/합성·편집물을 유포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맞추어 적용 법률을 달리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촬영/합성·편집을 하거나, 소지한 경우 해당 조항에 맞는 처분을 받으면 될 것이며, 이를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경을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양형기준이다. 또한 삭제와 폐기하는 행위는 증거인멸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다. 실제 본 단체 지원 사례 중,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위해 촬영물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는 유포 전에 삭제한 행위를 긍정적 고려 요인으로 해석한 사건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양형기준에 포함된다면 불법촬영 이후 증거인멸을 위해 삭제, 폐기하는 가해자들 모두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포된 촬영물/합성·편집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으로 회수하는 경우를 감경사유로 반영함에 있어서도 매우 큰 문제가 예측된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감형을 받기 위해 디지털장외사와 같은 삭제업체에 삭제를 의뢰하고 계약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디지털성폭력으로 돈을 버는 산업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이 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성폭력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 물리적 공간에서의 옮겨지는 물건과는 다르게 한번 유포가 되면 ‘회수’라는 용어가 성립할 수 없다. 즉, 피해복구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이 없이 가해자가 디지털장외사와의 계약서 한 장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해당 양형인자는 제외하고 대신 마약범죄 양형기준과 같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감경요소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공범의 신원, 유포 플랫폼 운영자 정보, 유통 플랫폼 정보 등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에 수사에 크게 기여한 경우 감경을 고려할 수 있겠다.

## ○ 농아자

농아자의 경우 모든 범죄에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된다고 하나, 이와 같은 기준이 각 범죄에 따라 적절한 적용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상당수 청각장애인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갖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기도 하였다.<sup>2)</sup> 해당 조항의 필요성 또한 이해할 수 있는바, 삭제가 아닌 개정의 방향으

2) “농아자 범죄, 형 감경 필요한가”. <대한변협신문>, 2018.12.10.,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94>>

로 적절한 조건 및 정의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청각장애인을 낮춰 부르는 ‘농아자’라는 표현이 아닌 ‘청각장애인’이라는 적합한 법률용어로 대체하여 표기해야 할 것이다.

##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 정의규정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촬영물과 함께 유포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보통 유포가 이루어질 때, 촬영물에 더하여 게시물 제목, 영상과일 이름 등에 텍스트 정보가 함께 유포된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와는 별개로 재미, 주의 끌기, 자랑, 별다른 이유 없음을 사유로 직업, 학교명, 이름, 지역, 나이, SNS계정 등의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함께 표기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어렵고 인격권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 범행수법 불량 관련 정의규정에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유포한 경우'를 명시하는 것은 해당 양형인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의규정이라고 본다.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촬영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촬영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 시설의 교사·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③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본 가중요소는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의미 있는 양형인자이다. 다만 자살·자살시도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을 때,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자살 혹은 자살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가해자를 너무나 처벌하고 싶은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해당 양형인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피해자분들을 만난다.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면 재판부가 그 고통을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이다. 그 때문에 해당 내용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피지위자에 대한 교사

특히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있어서, 합성·편집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자와 만들어주는 자가 분리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러나 본 단체 지원 사례 중, 허위영상물을 만든 자는 처벌되었으나 합성의뢰자는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 합성 의뢰자의 행위를 교사로 보고 가중하여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해당 사안은 수사단계 및 구성요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수 있겠으나,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2가 신설된 법률인 만큼 양형기준에서도 범행의 특성에 맞는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극 가담을 감경요소로 적용하는 것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가담을 한 것일 뿐, 실제 범죄를 행하였을 때 해당 양형인자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집단적이거나 조직적 범죄의 경우 이미 그와 같은 구성 자체로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기에,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 가담을 한 경우라고 하여 감경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극적으로 범죄를 행한 공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온당하다.

#### ○ 진지한 반성

진지한 반성은 증명과 측정이 불가능하며, 이미 피고인들은 감경요소로 반성을 인정받기 위해 반성문 대행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반성문을 쓰고 있다.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사건 대응 과정에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로 작동하는 것은



현실에서 매우 기만적이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기만적인 반성문을 재판부에 지속해서 제출하는 사실에 추가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진지한 반성의 탈을 쓴, 신뢰할 수 없는 반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 성폭력 상담소 후원 증빙, 헌혈 증빙 자료 등은 반성문과 함께 ‘진지한 반성’의 세트로 가해자 조력 전문 변호사들이 안내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본 단체에도 신상까지 공개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요 가해자가 아직 범행이 입증되기 전에 후원하고 후원증서를 집요하게 요구한 바 있다. 단순한 엄벌주의는 경계하여야겠지만 이미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인은 그 의미에 부합하지 않기에 적절한 양형기준이 될 수 없다.

#### 4)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제(師弟)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본 양형인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로 반영되었다. 해당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도 포함이 필요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연인, 배우자, 성적파트너, 직업적 관계 등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불법촬영 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중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 지원 중 마주하는 사례들에서 연인, 배우자, 성적파트너의 관계를 이용한 것은 물론이고 직업적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중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라넷’에는 여자친구와 아내를 불법 촬영한 촬영물

을 올리는 전용 게시판이 존재하였으며, 텔레그램 성착취 방 중에는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영상들을 공유하는 목적의 방이 여러 개 존재하기도 했다. 따라서 인적 신뢰관계 이용 범행을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의 양형인자에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를 추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양형인자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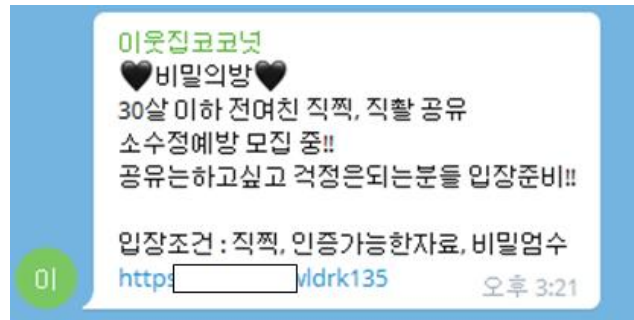


그림 12 텔레그램 성착취방 모니터링 캡처 이미지

#### 마. 집행유예 기준의 적정성

양형인자와 동일한 기준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으로 같음한다.

##### 1) 긍정적 참작사유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직업이나 지위, 전도유망,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혹은 감형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당 참작사유는 지나치게 피고인 중심의 관점이다.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서술은 오히려 성폭력이 그의 '평범한' 일상에 만연하고 이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방증으로 해석하여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양가족 유무나, 부양가족의 곤경을 집행유예 기준으로 삼을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과거의 가부장 이데올로기, 남성 중심적인 생계부양자 관점의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장이라는 이유로 쉽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사유를 성폭력 범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 2) 부정적 참작사유

###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사회적 유대관계 관련 내용이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빠진다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정적 참작사유에서도 제외할 필요가 있다.

### ○ 진지한 반성 없음

양형인자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진지한 반성은 제외하고, 부정적 참작사유에도 반성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거나 혹은 ‘반성 없음’을 남겨두는 안을 제안한다. 이는 범죄가 입증된 피고인은 응당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여기며, 반성의 기미가 없을 경우는 부정적 참작사유로 보는 방향이다.

## 3. 나가며

오래 기다린 양형기준안인 만큼, 이 양형기준안이 만들어지는 데에 힘을 모은 수많은 이들과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노력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토론문을 작성하였다. 최종적인 양형기준안이 훌륭히 마련되어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재판부의 오명을 조금이라도 지우고, 성폭력 문화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되기를 바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양형기준안에  
대한 토론문(신진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양형기준안에 대한 토론문

신진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변호사)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 2010년 이후 급증한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을 실무에서 경험해왔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연구에 참여하였고, 2019년 대법원 양형연구회가 주최한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해왔다.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는 소식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로서 매우 반가운 것임에 틀림없으나, 올해 N번방, 박사방 등 모든 국민을 경악케 한 사건을 보면서 좀 더 빨리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 가. 양형기준안의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에 대하여

1) 디지털 성범죄는 유형력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 등을 주로 이용하는 범행 수법 및 광범위한 피해 확산 양상 측면에서 기존의 성범죄와는 전혀 다른 형태·성격의 범죄이고,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 포섭할 경우, ① 일반적 기준, ②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③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체계 정합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성범죄와 달리 독립된 범죄군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 다소 이견이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찬성한다.

첫째,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착취물 취득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출수위가 더 높은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으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취득하고 이를 유포의 수단으로 삼는 점에서는 기존의 성범죄와 구별될 수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형력이 주된 범행수법이기에 때문에 기존의 성범죄의 범행수법과 구별되지 않는다. 2020년 5월 신설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가 그것이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의 성범죄와 달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정도, 그 양상 및 그 결과에 대한 피해자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가 지원한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들 중 다수는 피해사실을 알고 나서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호소를 넘어서 학교등교, 직장출근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 불면증, 수면장애 등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실제로 직장 내 탈의실 불법촬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sup>4)</sup> 실무에서 강간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현행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등치상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치상죄가 없어 피해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자살, 자살 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온라인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2018 참조  
촬영피해자 324명 중 73명(22.5%)이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하였고, 피해 유형은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49건(67.1%)으로 가장 많았다.

4) 한국일보, 동료가 탈의실 촬영... 청춘 앓아가는 직장성폭력, 자세한 것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091091097291>, 오마이뉴스, '자살까지 할 필요 있냐'는 댓글에 피해자 아빠의 답변, 자세한 것은 <http://omn.kr/1msw5>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이와 같은 이유로 보인다.

## 나. 각 범죄유형별 형량범위의 적정성 여부

설명자료에 의하면,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2014.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5년간 양형자료 조사결과 평균형량은 7.08개월(실형 8.66개월, 집행유예 6.79개월)이고, 실형 = 6개월 31.8% > 8개월 19.8% > 10개월 12.8%, 집행유예 = 6개월 45.8% > 4개월 19.6% > 8개월 16.5%로 나타났다. 2020년 5월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양형자료 조사결과는 제한된 범위에서 참고가능하다고 되어있다.

그 동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판의 근거는 벌금형이 대다수 선고되고, 그 벌금형의 액수도 낮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sup>5)</sup>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08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0.2%로 증가하였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의 서울 관내에서 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결문을 분석대상으로 한 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 심포지엄 자료<sup>6)</sup>에 의하면, 1심의 경우 벌금형이 71.97%

5)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15.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범죄통계 원표를 토대로 분석

6) 한국여성변호사회, '온라인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 2016 참조

벌금형은 71.97%, 집행유예는 14.67%, 선고유예는 7.46%, 징역형은 5.32%, 순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11건(전부무죄 9건, 일부무죄 2건)이 있었다. 징역형은 6월 29.27%, 1년 19.51%, 8월, 10월 각 14.63%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1심 징역형량은 6월에서 1년 사이에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벌금형은 200만 원 26.60%, 300만 원 22.00%, 100만 원 15.06%, 150만

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4.67%, 선고유예 7.46%, 징역형 5.3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된 비율이 20%정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문을 대상으로 하는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sup>7)</sup>에 의하면, 벌금형은 54.1%, 징역형은 11.1%, 집행유예는 27.8%, 선고유예는 6.0%, 무죄는 1.1%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된 비율이 38.9%로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위 설명자료에 의하면, 2014.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5년간 선고된 실형과 집행유예는 1,558건이고, 위 5년간 벌금형이 선고된 건수와 그 비율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5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비중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이 실제 양형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실형과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는 신설되어 양형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종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법정형이 유사하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설명자료에 의하

---

원 12.53% 순으로 나타났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79.97%에 이룸을 알 수 있다.(p.31-p.33)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온라인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2018 참조  
 2017년도에 선고된 1심판결문 중 징역형량을 살펴보면, 징역 6월이 22.0%, 10월이 19.5% 8월이 17.1%, 1년이 14.6%, 2년 이상 7.3%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선고된 1심 판결문 중 벌금형량을 살펴보면, 300만원 30.5%, 500만원 22.5%, 200만원 16.5%, 400만원 10.5% 순으로 나타났다.(p.62-p.64)

면,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하는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직접 촬영물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동일한 편집 등 범죄와 반포 등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반드시 달리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소유형 1(촬영)과 소유형2(반포 등)가 그 법정형이 같아도 권고형의 범위를 달리한 것과 같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중 소유형 1(편집 등)과 소유형 2(반포 등)의 법정형이 같지만,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소유형 2(반포 등)는 소유형 1(편집 등)과 그 행위태양과 죄책이 다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마찬가지로 소유형 2(반포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를 달리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다. 양형인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와 달리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되어 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다수범죄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인자를 특별감경인자 취급하고 있고, 성범죄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는 표현은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부적절할 수 있어,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감경인자를 발굴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특별감경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그 표현을 바꾸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에서는 가슴이나 치마속 등 신체부위만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감경요소에 포섭될 수 없다. 비록 성범죄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는

표현은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부적절할 수 있어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감경인자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현은 오히려 특별감경요소로서는 더 불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인지감수성 관점에서 가중요소로서 설정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자세히 설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삼기 위하여 위 가중요소에서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납득할만한 사유를 자세히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특별감경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집행유예의 긍정적 요소로도 반영되는데 같은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의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마찬가지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되어 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의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직접 촬영물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고,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따라 편집, 합성, 가공한 것임을 식별가능성이 달라지므로 허위영상물임을 명백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잡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로서의 그 기준이 불분명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집행유예의 긍정적 요소로도 반영되는데 같은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의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마찬가지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되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유포한 사진이나 영상을 피해자가 인터넷사이트를 직접 검색하거나 사설업체에 삭제의뢰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업체가 불법영상물 플랫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확산의 또 다른 창구가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발족하여 삭제지원을 시작하였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9. 14. 시행)에 삭제지원 및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완벽한 삭제, 유포 등 피해확산방지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할 때에도 이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한 것은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①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②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의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①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②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회수한 경우,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그 차이를 살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는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이고,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의 경우에는 유포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회수한 경우이다. 짐작컨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모두 회수‘한’ 경우만을 특별감경요소로 삼고 있지만,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의 경우에는 모두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수하려고 노력하였다면 특별감경요소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자료에서 찾을 수 없고, 처벌불원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에 이르지 못한 ‘상당 금액 공탁’,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요소라는 점에서 특별감경인자는 물론 일반감경인자에서도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자료집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김현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이경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김현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

김현아(김현아 법률사무소 변호사)

---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다시 한 번 그 심각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오랜 기간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이 나오게 되어 무척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이 마련하고자 한 양형기준안이 종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방식에 맞추고, 기존의 성범죄 등 선재하는 양형기준들과의 통일성, 균형성을 고려한 한계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과 제13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지정 토론을 맡게 되어 두 조항과 관련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먼저 2020. 5. 19. 신설된 제14조의3은 누적된 처벌례가 없어서 사례군이거나 운영의 문제점 등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명확한 지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등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피해를 기반으로 제정된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등의 죄명으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성폭력 처벌법에서 제14조의3이 제정된 취지는 본 범죄가 ‘성폭력’ 범죄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촬영물 등을 이용한’ 부분이 신설하는 양형기준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등을 당한 피해자는 끝이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대의 한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서 “성관계 영상을 너가 모르는 곳에 숨겨 놔고 넌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너가 결혼하는 날 유포할거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날 이후 이 여성은 날마다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이트를 뒤지며 혹시나 자신의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었나 찾고 있고, 결혼하는 날 보복으로 영상을 보낼 것이라는 말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촬영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만으로도 피해자의 삶과 일상은 깨어지고 평생 불안감에 살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초딩 자위 영상을 보고 싶다. 네 초등학교 여동생의 옷을 벗겨 같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지금 갖고 있는 네 자위행위 동영상을 마음대로 쓰겠다’고 협박한 사례, 피해자가 감금되었다가 도주를 시도하였을 때 기존 촬영한 영상으로 해당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 노예라 칭하며 끝없는 요구를 한 사례 등,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하는 범죄가 심각하자 별도로 성폭력 처벌법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2020. 5. 19. 제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 유포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포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극단적으로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유포 협박을 받은 피

해자와 관련된 한 통계 결과를 보면, 자살 계획 50.0%, 자살 시도 35.%(윤덕경 외(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참조)로, 실제 유폐된 경우 못지않게 그 피해 상황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기준 마련 시 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실태 외에도, 이를 경험하고 지켜본 국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의 실제 선고형과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처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원은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러한 국민과의 인식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해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내용 중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감경사유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면, 감경사유 없음 43.6%, 피해자와 합의 32.4%, 자수, 자백 2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sup>1)</sup> 감경사유가 ‘아예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단적인 국민 의식은,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가 미약하게 처벌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앞으로 양형기준안에 중요한 가치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 실태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양형인자에 대한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 협박,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협박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특별 감경인자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협박범죄, 강요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로 반영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협박, 강요범죄의 성격을 가지는 이 유형 범죄의 양형

1) 디지털성범죄 처벌 국민 의견, 2020. 1. 30.부터 2020. 3. 31.까지 62일의 기간 동안 총 20,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3933731](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3933731)

인자로도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적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협박, 강요범죄의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이 감경요소를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을 이용하는 범행 수법, 빠르고 광범위한 피해 확산, 심각한 피해 회복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 협박, 강요죄와는 다른 성격의 범죄이고, 따라서 기존의 협박, 강요 범죄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강요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범죄의 특성상,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이 죄의 죄질이 매우 나빠 별도로 가중처벌 하고자 신설 입법화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굳이 감경요소로 도입을 한다면, 더 죄질이 나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서 단순 협박 강요죄보다 더 완화된 기준의 감경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요죄의 경우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를 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 강요죄와 비교하였을 때 '극히' 경미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지도 않아, 단순 강요죄와 비교한 양형에 있어서 균형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협박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반영하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요죄에서도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별도로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본 죄 역시 협박 강요의 자체가 중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안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특별가중요소로 반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피해와 무관하게 협박, 강요 행위 그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쁜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를 가중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본 죄를 도입한 취지에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협박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가장 큰 관심은 촬영물의 존재 여부 확인과 그 삭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시된 감경인자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이 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죄이고 따라서 촬영물 등의 ‘존재’가 확인, 전제되는 경우에는 이 촬영물 등에 대한 사후처리가 피해자에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촬영물 삭제, 회수, 폐기 등의 협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차후 촬영물 유포 등 영구적인 불안감에서 해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협박·강요에 이용된 촬영물, 복제물을 자발적으로 완전 폐기한 경우’등을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 경제적 이득 요구, 취득

현실적으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의 경우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

취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고,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 중 하나가 ‘몸캠피싱’입니다. 휴대폰 해킹과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이 결합된 이른바 ‘몸캠피싱’이 4년 새 18배 증가했고, 국회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몸캠피싱은 1,824건으로 2015년 102건 대비 17.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몸캠피싱 피해규모는 55억 원으로 3년 새 6.3배 증가했습니다.<sup>2)</sup> 이처럼 촬영물을 이용하여 이른바 ‘몸캠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동영상을 확보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실태와 피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 죄의 가중요소로 ‘재산상 이익을 요구, 취득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몸캠피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그 피해액도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다른 디지털 성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 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반포)처럼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라도 가중인자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sup>3)</sup>

##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의 특별가중인자 중에서 ‘신고의무자 또는

2)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627>, 2020. 9. 29.자, 몸캠피싱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랜덤채팅’, ‘네잇클로버’, ‘심톡’, ‘틱톡’ 등에 익명으로 가입해 미모의 여성을 사칭한다.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접근,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유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469616&code=61121111&cp=nv>, 2020, 4, 12. 자, A씨 조직은 여성 직원들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피어 영상통화로 노출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영상통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건네고 휴대전화에 설치할 것을 권유했다. 악성코드 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록을 확보한 A씨 조직은 노출행위 영상을 녹화했다. 이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 조직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52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큰 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 빠져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은 현재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서는 특별가중인자입니다. 그런데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서도 이러한 지위는 충분히 남용되어 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가중인자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반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제정 당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구 특별법이 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될 때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으며, 최근 2020. 5. 19. 개정되어 벌금형이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의 대상이 되었으나,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 벌금형을 받을 경우가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현재 상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 가장 가벼운 범죄로 여겨지고 있고 실제 처벌도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경미하고 또 경미한 죄’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규정들 중에서 ‘이미지’와 관련된 처벌규정들은 최근 국회에서 어느 정도 제, 개정이 되었지

만,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언어, 텍스트 괴롭힘 행위에 대한 법적 정비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행법 체계에서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또한 실제 범죄 발생량도 상당하여, 양형자료조사 대상 1,891건 중 19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상당도 다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는데 그 적정성에 우려가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리 결과(2019 범죄분석)를 살펴보면, 2018년 전체 1,419건 중에서 605건 42.63%가 불기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소된 건수 618건 중 408건이 구약식으로 처리되어 65.53%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는 기소된 건수 2,458건 중 구약식이 783건으로 31.85%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기반으로 볼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약식 사유를 외부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검찰단계에서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이미 반영되어 구약식 처리되었으리라 추측합니다.

	계	기소				불기소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구속	불구속						
통신 매체	1,419	618	12	198	408	605	358	231	5	11
카메 라등	5,245	2,458	200	1,457	783	2,103	1,138	917	3	45

다음 법원의 선고 결과를 보면 2014~2018년 통계에 따르면 벌금 75%, 집행유예 15%, 실형 5% 선에서 유지되고 있고, 징역 형량은 6월에 47.4%, 4월~1년에 96.4%가 집중되어 있습니다(양형연구회 3차 심포지엄 자료집 30쪽). 양형 자료조사 결과상 153건의 집행유예 중에서도 6월 이하가 85.6%입니다.

기존의 이런 처벌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신고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미약한 처벌로 신고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현행 법제도의 운영에 있어 이미 문제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미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의식을 더욱 악화시키고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새로이 만들면서 굳이 특별감경요소로 적시하는 것은 지나친 감경요소의 반영으로, 앞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계획적, 의도적인 경우가 가중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피해자에게 성적 괴롭힘과 고통을 주려는 가해자의 계획적, 의도적 행위인 경우에는 가중인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적신뢰관계와 관련된 가중 사유가 없는데 배신성이 강한 지인에 의한 범죄는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의 의견 수렴과 노력으로 마침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제대로 적용되어 엄격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리셋과 추적단 불꽃은 79일간 7,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판결에 있어 법관들 간에 형량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문항에서는 67.7%인 5,081명이 그렇다고 답하였고 이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판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근거일 것입니다(적합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유의사항, ReSET, 여성의당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재설정 촉구 간담회 자료집 참조).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해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 존중되어야 하나, 구체적 사건마다의 다양하고 특수한 사정을 모두 포섭하거나 반영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형까지를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처벌은 일반 국민들에게 법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줄 것입니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타 범죄들에도 적절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기준이 재판실무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이경렬)**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이경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들어가는 말

-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명 ‘n번방 방지법’이 마련되었고, 그 법정형의 하한이 대폭 상향되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법	신법
<p>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20.5.19&gt;</p>
<p>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8.12.18.&gt;</p>	<p>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8.12.18, 2020.5.19&gt;</p>

구법	신법
<p>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lt;개정 2018.12.18&gt;</p> <p>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u>에 처한다. &lt;개정 2018.12.18&gt;</p>	<p>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b>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b>)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lt;개정 2018.12.18, 2020.5.19&gt;</p> <p>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u>3년 이상의 유기징역</u>에 처한다. &lt;개정 2018.12.18, 2020.5.19&gt;</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lt;신설 2020.5.19&gt;</p> <p>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lt;신설 2020.5.19&gt;</p>

- 나아가 동법 제14조 제3항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영리목적 반포등 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의 하한뿐만 아니라 상한까지도 대폭 강화되었다.
- 더욱이 위 법률규정의 개정과 함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와 동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죄를 신설하였고, 그리고 미수범 처벌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구 신법	신법
<p>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p> <p>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u>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3.24]</p>	<p>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p> <p>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b>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b>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p> <p>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b>7년 이하의 징역</b>에 처한다.</p> <p>④ <u>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lt;신설 2020.5.19&gt; [본조신설 2020.3.24]</p> <p>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p> <p>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b>1년 이상의 유기징역</b>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b>3년 이상의 유기징역</b>에 처한다.</p> <p>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p>

구 신법	신법
	<p>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5.19]</p> <p>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5.19]</p>

- 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상의 처벌규정이외에도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지칭하는 또 하나의 범죄유형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위반의 죄가 있다.

구법	신법
<p>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p> <p>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u>10년 이하의 징역</u>에 처한다.</p> <p>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u>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u>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p> <p>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t;개정 2020.6.2&gt;</p> <p>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b>광고·소개</b>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u>5년 이상의 징역</u>에 처한다. &lt;개정 2020.6.2&gt;</p> <p>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b>광고·소개</b>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u>3년 이상의 징역</u>에 처한다. &lt;개정 2020.6.2.&gt;</p> <p>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t;개정 2020.6.2&gt;</p> <p>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u>1년 이상의 징역</u>에 처한다. &lt;개정 2020.6.2.&gt;</p>

구법	신법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제목개정 2020.6.2]

-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정성 여하에 관한 공청회 자리에서 대상범죄의 구체적·개별적 법정형을 소개·설명하는 이유가 법정형은 사실심법원의 양형실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이다.
- 전술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포섭되는 개별 범죄유형에서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를 도외시하면, 성폭력처벌법상으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 최고형이고(동법 제14조의3제2항 참조), 청소년성보호법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동법 제11조제1항 참조).
- 하지만 확정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 제1유형, 가중 구간의 권고형량이 ‘7년에서 13년까지’로 정해져 있어 ‘무기 또는 1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그 선고형의 권고 범위에서 사라져 있다. 이를 양형기준의 권고적 효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모자람이 있다.<sup>1)</sup> 국민적 공분에 근거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회의 가중처벌 입법대책을 회피하는 우회로를 만들었거나 또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까지 급격하게 상향·개정한 국회의 돌발적(?) 형사입

1)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원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2.30]

법을 사범이 수정하는 보완대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형 법[법률 제293호, 1953.9.18., 제정]	형 법[법률 제10259호, 2010.4.15., 일부개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u>1월 이상 15년 이하</u> 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u>25년까지</u> 로 한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u>1개월 이상 30년 이하</u> 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u>50년까지</u> 로 한다. <개정 2010.4.15>

- 그도 아니라면 제정된 현재의 양형기준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일 당시의 법원실무의 경험적 선고형량을 고려·반영하여 각 법원별 선고형의 편차를 조정하는데 기인하고 있는 양형위원회의 기준설정 작업인 것이다.
- 따라서 법정형의 가중 및 과중에도 불구하고, 시차를 두고 만들어지는 개별범죄군 사이에 권고형량의 죄형 균형 또는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정형의 숨겨진 권고형량 구간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 2. 확정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중심으로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9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2	강요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1) 위 양형기준표상의 제1유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정한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대한 권고형량표이다.

- 일반 「형법」 상의 범죄로서 이에 비견되는(?) 범죄로는 제284조 특수협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성폭력처벌법	형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5.19.]  * 제15조 미수범 처벌규정 있음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 제285조 상습범 처벌규정 있음  * 제286조 미수범 처벌규정 있음

- 한편 폭력범죄 양형기준(2012.6.18. 의결, 2012.7.1. 시행, 2018.6.11. 수정, 2018.8.15. 시행) 4. 협박범죄 ‘제4유형의 특수협박에 대한 구간별 권고형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 8월	2월 - 1년	4월 - 1년6월

2)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생략)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누범·특수협박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형법상 특수협박에 대한 양형기준과 비교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에 는 동법에서 특히 가중처벌하도록 신설한 법정형의 숨은 구간이 과도한 것으로 여겨진다(4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성폭법	1	협박	9월~1년6월	1년~3년	2년~4년
형법	4	누범·특수협박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2) 양형기준표상의 제2유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대한 권고형량표이다.

####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9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2	강요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일반 「형법」 상으로 이와 비견할 수 있는(?) 범죄로는 제324조의2 인질강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형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u>3년 이상의 유기징역</u> 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5.19.]  * 제15조 미수범 처벌규정 있음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u>3년 이상의 유기징역</u> 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u>상습범 처벌규정 없음</u>  * 제324조의5 미수범 처벌규정 있음

-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제324조의2이하에서 정한 ‘인질강요’에 대한 양형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형법 제324조의2 인질강요와 유사한 구성요건적 행위태양으로 사람을 인질로 삼아 재산을 강취하는 제336조 인질강도의 법정형 또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마련된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에서도 정작 양형기준표는 보이지 않는다.

- 결국 동일한 법정형으로 성폭력범죄를 억지하는 일반 「형법」 상의 제297조 강간죄에 대한 성범죄 양형기준(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10. 6. 29. 수정, 2010. 7. 15. 시행; 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행; 2012. 1. 30. 수정, 2012. 3. 16. 시행; 2013. 4. 22. 수정, 2013. 6. 19. 시행; 2020. 5. 18. 수정, 2020. 7. 1. 시행)을 참고한다.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의 권고형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5년6월	5년-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일반 형법상의 강간죄(제297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공여지책으로) 성폭력처벌법상의 촬영물 등 이용 강요(제14조의3 제2항;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비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sup>3)</sup>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성폭법	2	강요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형법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 3. 나가는 말

- 국민적 공분에 터 잡은 형사특별법의 과잉입법 내지 과중처벌은, 그 일

3) 물론 위의 양죄 사이에 존재하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단순 비교에는 문제가 있는 분석 방법이다. 다만, 최소한 법정형에 상응하는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편차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데 참고는 될 것이다.



시적 효과를 차지하더라도 형벌법규의 죄형균형을 무너뜨리는, 정작 당해 피고인에게는 적용할 수도 없는(형벌불소급의 원칙; 소급금지원칙), 인기부합적인 입법정책일 뿐이다.

- 무너진 법정형의 죄형균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권고적 효력에 따르는 선고형량의 양형편차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가 시차별 확정되는 양형기준안에 관한, 시체(時體)말로 ‘찐 문제’이다.
- 위에서 비견한 동일한 법정형으로 범죄를 억지하고 있는, 행위태양의 유사범죄 간 권고형량의 범위를 비교분석한 방법은 권고형량의 편차를 해소하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지만 일응의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자평한다.
- 현행 양형기준에 탈루되어 있는 인질강요, 인질 강도 등 인질 관련 범죄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마련이 시급하고 필요하다.